KOSCA
대한전문건설협회
충청북도회

수신 : 회원제위

참조 :

제목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·공포 안내

---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·공포(2026. 10. 27.)됨에 따라 **❶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, 폭염·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, ❷작업중지 제도 개선 및 과징금 신설 등**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○ 주요내용 :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(2027. 4. 28. 부터)

구 분	주 요 내 용	시행일
산안비 계상	하도급 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반영 (제72조 제1항)	
공기연장	공사기간 연장 요청사유에 폭염·한파 추가 (제70조제1항)	※공포 즉시시행 (2026.10.27)
작업중지	급박한 산업재해 위험 시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 작업중지 요건 완화(제52조제1항,2항,3항)	
과징금	안전·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% 이내 부과(제161조의2)	

붙임 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·공포 주요내용 1부.
2. 전자관보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. 끝.

※ 협회 홈페이지(https://chungbuk.kosca.or.kr/)- 공문, 공지사항 No. 5993참조

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
회 장 류 근 형

담당자 주임 이재한 과장 고민숙 실장 하재종
시행 전건협 충북 제685호 (2026. 10. 28)
우 2877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(용암동) 전문건설회관 7층/https://chungbuk.kosca.or.kr/
전화 043-294-7671 전송 043-294-7675 / 전자우편 bokil@kosca.or.kr